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상황 해제 시까지)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견본주택 홈페이지(http://www.dbkhapt.com)를 운영합니다. 단, **견본주택 홈페이지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시 당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이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0.27.입니다.(청약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도봉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7.)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

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이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와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 (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

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 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 에서 ‘청약통장 사용’ 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bkhapt.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인 서울시 도봉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 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러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인지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해당 계약체결일에 수입인지를 구입하셔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처 : 수입인지사이트 <http://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등)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계약체결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일 정	11월 6일(월)	11월 7일(화)	11월 8일(수)	11월 15일(수)	11월 17일(금) ~ 11월 26일(일)	11월 27일(월) ~ 11월 29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717 - 문의 : 02-955-8801 ※ 자격확인서류 접수 및 예약관련 사항은 추후 통보 예정 ※ 당첨자 본인 외 동반 1인 포함 입장 가능 ※ 자격검증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서류접수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이 협소하여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7.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서울시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 13220호(2023.10.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95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18층, 5개동, 총 299세대 중 일반분양 13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조합원 : 109세대(보류지 : 2세대 포함), 임대 : 60세대 제외, 일반공급 : 64세대, 특별공급 : 66세대 (일반[기관추천] 13세대, 다자녀가구 13세대, 신혼부부 24세대, 노부모부양자 4세대, 생애최초 12세대 포함)]
- 입주 예정 시기 : 2026년 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입주지정 개시일 2개월 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m ²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 표기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주택	2023000555	01	059.8916A	59A	59.8916	25.2648	85.1564	48.8429	133.9993	32.0686	2	-	-	-	-	-	-	2	1	
		02	075.8256A	75A	75.8256	26.0256	101.8512	61.8375	163.6887	38.3556	28	3	3	5	1	3	15	13	2	
		03	084.8658A	84A	84.8658	23.9386	108.8044	69.2100	178.0144	40.9741	5	1	1	1	-	-	3	2	3	
		04	084.9602B	84B	84.9602	24.0403	109.0005	69.2870	178.2875	41.0479	64	6	6	12	2	6	32	32	5	
		05	084.8897C	84C	84.8897	24.7286	109.6183	69.2295	178.8478	41.2806	31	3	3	6	1	3	16	15	3	
합계											130	13	13	24	4	12	66	64	14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기간	
								계약시	2024.03.04.	2024.07.01.	2024.11.01.	2025.03.03.	2025.06.02.	2025.09.01.		
59A	2	104동(4호)	2층	1	335,870,600	344,029,400	679,900,000	67,990,000	67,990,000	67,990,000	67,990,000	67,990,000	67,990,000	67,990,000	67,990,000	203,970,000
			3층	1	344,762,600	353,137,400	697,900,000	69,790,000	69,790,000	69,790,000	69,790,000	69,790,000	69,790,000	69,790,000	69,790,000	69,790,000
75A	28	103동(4,5호)	2층	1	373,217,000	382,283,000	755,500,000	75,550,000	75,550,000	75,550,000	75,550,000	75,550,000	75,550,000	75,550,000	75,550,000	226,650,000
			3층	2	383,097,000	392,403,000	775,500,000	77,550,000	77,550,000	77,550,000	77,550,000	77,550,000	77,550,000	77,550,000	77,550,000	232,650,000
			4층	2	391,001,000	400,499,000	791,500,000	79,150,000	79,150,000	79,150,000	79,150,000	79,150,000	79,150,000	79,150,000	79,150,000	237,450,000
			5~9층	10	398,905,000	408,595,000	807,500,000	80,750,000	80,750,000	80,750,000	80,750,000	80,750,000	80,750,000	80,750,000	80,750,000	242,250,000
84A	5	101동(1,2호) 104동(1호)	2층	3	411,551,400	421,548,600	833,100,000	83,310,000	83,310,000	83,310,000	83,310,000	83,310,000	83,310,000	83,310,000	83,310,000	249,930,000
			3층	2	422,468,800	432,731,200	855,200,000	85,520,000	85,520,000	85,520,000	85,520,000	85,520,000	85,520,000	85,520,000	85,520,000	256,560,000
			2층	5	413,428,600	423,471,400	836,900,000	83,690,000	83,690,000	83,690,000	83,690,000	83,690,000	83,690,000	83,690,000	83,690,000	251,070,000
			3층	5	424,346,000	434,654,000	859,000,000	85,900,000	85,900,000	85,900,000	85,900,000	85,900,000	85,900,000	85,900,000	85,900,000	257,700,000
			4층	5	433,089,800	443,610,200	876,700,000	87,670,000	87,670,000	87,670,000	87,670,000	87,670,000	87,670,000	87,670,000	87,670,000	263,010,000
84B	64	102동(2,3호) 103동(2,3호) 104동(2호)	5~9층	25	441,833,600	452,566,400	894,400,000	89,440,000	89,440,000	89,440,000	89,440,000	89,440,000	89,440,000	89,440,000	89,440,000	268,320,000
			10층 이상	24	446,230,200	457,069,800	903,300,000	90,330,000	90,330,000	90,330,000	90,330,000	90,330,000	90,330,000	90,330,000	90,330,000	270,990,000
			2층	3	414,564,800	424,635,200	839,20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83,920,000	251,760,000
			3층	3	425,531,600	435,868,400	861,400,000	86,140,000	86,140,000	86,140,000	86,140,000	86,140,000	86,140,000	86,140,000	86,140,000	258,420,000
84C	31	102동(1,4호) 103동(1호)	4층	3	434,324,800	444,875,200	879,20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87,920,000	263,760,000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 (라인)	총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24.03.04.	2024.07.01.	2024.11.01.	2025.03.03.	2025.06.02.	2025.09.01.	입주지정기간					
			5~9층	15	443,118,000	453,882,000	897,000,000	89,700,000	89,700,000	89,700,000	89,700,000	89,700,000	89,700,000	89,700,000	89,700,000	89,700,000	89,700,000	269,100,000		
			10층 이상	7	447,514,600	458,385,400	905,900,000	90,590,000	90,590,000	90,590,000	90,590,000	90,590,000	90,590,000	90,590,000	90,590,000	90,590,000	90,590,000	271,770,000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은 추가선택품목(플러스옵션/가전옵션 등)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 공급계약 체결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07년 7월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의무화 조치(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가 시행됨에 따라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산정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 방법] 주택형별 면적(㎡) × 0.3025 또는 주택형별 면적(㎡) ÷ 3.3058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공부상 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또는 실측정리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입주 잔금 납입시 상호 정산합니다. 다만, 분양면적 및 공유지분 면적 증감이 2%미만일 때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각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향·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득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 모형물과 공급안내문, 사이버 견본주택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세대)					
구분 (약식표기)		75A	84A	84B	84C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	-	1	-	1	
	장기복무 제대군인	-	-	1	-	1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	-	1	1	3	
	중소기업 근로자	1	-	1	1	3	
	장애인	서울특별시	1	-	1	1	3
		인천광역시	-	-	1	-	1
		경기도	-	1	-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50%]	2	1	3	2	8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50%]	1	-	3	1	5	
신혼부부 특별공급		5	1	12	6	2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	2	1	4	
생애최초 특별공급		3	-	6	3	12	
합 계		15	3	32	16	66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으로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요건, 입주자지족 등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유형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단,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당첨자로 봅니다(1회 특별공급 간주)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구 분	내 용																																
	<p>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p> <p>[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p> <p>- 일반(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p> <p>가. 주택공급신청자</p> <p>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p> <p>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p> <p>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아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p> <p>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p>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 요건</p>	<p>• 특별공급 유형별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241 624 2152 815"> <thead> <tr> <th>구분</th> <th>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 요건</th> </tr> </thead> <tbody> <tr> <td>일반(기관추천)</td> <td>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td> </tr> <tr> <td>다자녀가구</td> <td>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td> </tr> <tr> <td>신혼부부</td> <td>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td> </tr> <tr> <td>노부모부양</td> <td>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td> </tr> <tr> <td>생애최초</td> <td>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 이상</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41 863 2152 1023">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 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구분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 요건	일반(기관추천)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다자녀가구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신혼부부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노부모부양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생애최초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 요건																																
일반(기관추천)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다자녀가구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신혼부부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노부모부양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생애최초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청약신청 당일 마감시간 이후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청약 신청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청약 신청시 무주택 확인서 등으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결과(분리세대 포함)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공급세대에 미달된 경우, 잔여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고 소명기간(7일) 이내에 부적격사항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한 경우, 분양일정상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13세대)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아래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미청약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당첨 및 계약불가]
 - ※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추천기관

구분	해당 추천기관
국가 유공자 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서울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중소기업 근로자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추천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자 선정원칙**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 **예비대상자 유의사항** :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착오하는 사례가 빈번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예비순번을 부여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13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또는 입양자녀 포함) 이상을 둔 자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혼, 재혼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자녀는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2023.02.28.)]에 따릅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 수 ▶ 청약자 연령(생년월일) 높은순]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우선공급 낙첨자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해당지역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가 기타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는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1)+(2)+(3)+(4)+(5)+(6)		
(1) 미성년 자녀수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2) 영유아 자녀수	15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영유아 2명	10	
		영유아 1명	5	
(3)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 청약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4)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청약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5)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6)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청약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2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7년(전 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6호(2023.02.28)]에 따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함.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적용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 ÷ 근무월수)		상기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연간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 ÷ 근로기간 기준
	근무월수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	사업소득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기준
	사업기간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 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소득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 수 ▶ 추첨]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판결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판결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 등으로 확인합니다.
 -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4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주택건설지역인 서울시 일반공급 청약1순위 자격요건 충족
 -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8호(2023.02.28.)]에 따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거주지역 ▶ 가점산정 기준표]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12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①~④)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 이혼자녀 제외)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에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구분	청약신청 가능 주택형 약식표기	유의사항
1인 가구 중 단독세대 주택공급신청자	59A	해당 주택형 약식표기 외 청약 신청시 부적격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④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⑤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입주자저축 등 청약자격요건 :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17호(2023.02.28.)]에 따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인 가구	160%이하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3원 10,415,124원~	~12,195,290원 12,195,291원~	~12,864,787원 12,864,788원~	~13,922,622원 13,922,623원~	~14,980,458원 14,980,459원~	~16,038,293원 16,038,29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가구원수 적용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 ÷ 근무월수)	상기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연간소득 근무월수
사업자	사업자 사업기간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 ÷ 근로기간 기준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기준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 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소득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 추첨]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우선공급 소득기준 또는 일반공급 소득기준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
 - ② 추첨으로 선정된 자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p> <p>※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p> <p>※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p> <p>■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부한 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p>
청약신청 유의사항	<p>■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p> <p>■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나이는 “만 나이”,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 을 기준으로 합니다.</p> <p>■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p> <p>■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p> <p>■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p> <p>■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p> <p>■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하여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p> <p>■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p>■ 접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p> <p>■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p> <p>■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p> <p>■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p> <p>■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p>

중복청약 처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본인이 동시 청약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과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6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지역 : 서울특별시 거주자
		전용 60㎡초과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청약신청 일정,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 접수일 및 접수시간	신청방법 및 장소
특별 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11.6. (월) (인터넷 : 청약Home 09:00~17:30) (정보취약자 : 견본주택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 “청약홈” 앱 ■ 정보취약자 :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견본주택(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717)
일반 공급	1순위(해당)	서울시 거주자	2023.11.7. (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 “청약홈” 앱 ■ 정보취약자 : 청약통장 가입은행
	1순위(기타)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2023.11.8. (수) 09:00~17:30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 ‘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 ~ 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 과 “청약가상체험”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 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③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인터넷취약 장애인 등) 방문청약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대면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정보취약계층 방문청약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접수일에 견본주택 방문접수(접수 가능시간 : 10:00~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급 접수일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접수(창구 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청약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 입주자모집공고 “Ⅵ.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참고) ※ 견본주택 방문신청 접수시 특별공급 청약 유형별 자격확인서류 미비지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청약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신분증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 작성시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서명확인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종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가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p>①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습니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p>
<p>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명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 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됩니다.</p>
<p>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산정</p>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②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p>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p>① 무주택기간</p>	<p>32</p>	<p>만 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p>	<p>0</p>	<p>8년 이상 ~ 9년 미만</p>	<p>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p>1년 미만</p>	<p>2</p>	<p>9년 이상 ~ 10년 미만</p>	<p>20</p>	
		<p>1년 이상 ~ 2년 미만</p>	<p>4</p>	<p>10년 이상 ~ 11년 미만</p>	<p>22</p>	
		<p>2년 이상 ~ 3년 미만</p>	<p>6</p>	<p>11년 이상 ~ 12년 미만</p>	<p>24</p>	
		<p>3년 이상 ~ 4년 미만</p>	<p>8</p>	<p>12년 이상 ~ 13년 미만</p>	<p>26</p>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만 30세 이상 미혼자녀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첨제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등·호수 결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등·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등·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세대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세대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세대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을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부여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등·호수를 공개한 후 등·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등·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등·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등·호와 미계약 등·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

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가점제 당첨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세대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② 나머지 25%의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에게 공급
 -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세대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시 제출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당사 홈페이지(www.dbkhapt.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11.15.(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개별조회 ※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으며,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공급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당첨자의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사 홈페이지(www.dbkhapt.com)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모든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11.15.(수) ~ 2023.11.24.(금) - 10일간 조회가능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 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대상
	제공일시	2023.11.15.(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제출장소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입주자 제출기간, 제출방법 등은 개별 통보	2023.11.17.(금) ~ 2023.11.26.(일) 10:00 ~ 16:00까지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가능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견본주택(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717) *사전방문예약제로 접수예정이나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가능

※ 예비입주자(특별/일반)의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시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불가한 입주대상자는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기간 이내에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상당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제출서류상 누락 등 자격확인이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 공통서류와 특별공급 유형별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공통 서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경우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신분증		
	○		청약통장순위 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복무확인서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대상이 아닐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출
	○		국내거소신고증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 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 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상세" 로 발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한 태이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출산한 경우 출산증명서
	○		임신진단서	본인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출산이행 확인각서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 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로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상세" 로 발급
	○		소득 자격요건 확인서		· 소득신청대상의 소득금액 등 소득자격요건 확인서(견본주택 비치)
	○		임신진단서	본인	· 임신한 태이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출산한 경우 출산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	출산이행 확인각서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아래 소득증빙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 현황” 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아래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초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전부공개 “상세” 로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세대주)와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증빙용 ※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상세” 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 로 발급 · 단독 세대인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 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발급처 : 해당직장, 세무서)
	○		소득 자격요건 확인서		· 소득산정대상의 소득금액 등 소득자격요건 확인서(건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아래 소득증빙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소유 부동산 자산증빙서류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 현황” 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아래 자산입증서류 참조)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직계비속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단독가구의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출산한 경우 출산증명서
	○		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의 경우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직계존속	·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1년 이상 연속 등재 확인)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제(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의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부적격통보를 받은 경우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및 세대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당첨사실 소명자료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의 현장 위임장 작성 불가
	○		주민등록증, 인장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7.)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주변경,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생애최초)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①, ②, 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교육교사 등)	① 재직증명서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자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①, ② 세무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	① 재직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법인의 재무제표	①, ③ 해당직장/세무소 ② 세무서/등기소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② ①번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③ ②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④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 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③ 국민연금관리공단 ④ 해당직장
	무직자	①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②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장소 비치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 납 부 입증서 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결정세액의 환급이나 0 원인 경우)	①, ②, ③, ④ 해당직장, 세무서

※ 상기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는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통산 5년의 납부실적)이며,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신혼부부/생애최초) 「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 이 없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정부24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물건지 주소선택(주민등록주소) > 과세목록조회 > 발급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정부24
		• 주택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주택 공시가격 ※ "일사편리(kras.go.kr)" 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④ 정부24
'부동산 소유 현황' 이 있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주택외의 집합건물의 경우	① ② 대법원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이택스(서울) 이용안내 > 조회, 발급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결과 / 위택스(서울 외)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과 ※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시가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발급받아 건물시가를 확인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인터넷등기소 ③ 이택스, 위택스 ④ 정부24
		• 토지의 경우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 공시지가 ※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 "일사편리(kras.go.kr)" 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 제출하시면 소유권 등기사항 및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확인가능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① ②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③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④ 정부24
		•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읍(www.eimgakr) ④ 정부24

※ 상기 자산입증서류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신청자 중 소득기준(생애최초 160%, 신혼부부 맞벌이 160%, 외벌이 14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상기 자산입증서류는 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예외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함

일반공급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
공통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세" 로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 당첨자, 가점제 예비입주자)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단독 세대인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 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국내거소신고증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대상이 아닐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 현재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지(청약신청지)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위임용(본인 발급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물주택 비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의 현장 위임장 작성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대리인 제출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화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당첨사실 소명자료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0.27.)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나, 주택소유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565호 제3조)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 사업) 또는 사업 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 대금 완납일' (실거래 신고서 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 (1, 2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단독지분을 공유로 상속받은 경우와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 ※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출입문으로 별도공간이 분리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지분만큼의 면적으로 산정함.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 [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출입문으로 별도공간이 분리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 단독거주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지분 만큼의 면적·가격으로 산정함.
10.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 분양권 주택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접수경쟁률로 판단함)
 -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
 -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

구분	공급세대	접수	정당당첨자 계약 ②	잔여세대		잔여세대 추가계약①	주택소유 판단
				미분양(가)	미계약(나)		
A유형(타입)	100	200(경쟁)	100	X	X	-	② 주택소유
B유형(타입)	100	200(경쟁)	80	X	20	20	② 주택소유 / (나) 주택소유
C유형(타입)	100	50(미달)	30	50	20	70 *	② 주택소유 / (가), (나) 주택소유 아님
D유형(타입)	100	50(미달)	50	50	X	50 *	② 주택소유 / (가) 주택소유 아님

- ① 사전예약, 사후추가접수, 사업주체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
- ② 정당당첨자 계약은 모두 주택소유로 봄.
- * 경쟁 미발생으로 미달된 경우 정당 당첨자가 계약포기 후 미분양분이나 미계약분을 계약할 경우 주택소유로 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계약취소 물량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모두 주택소유로 간주함. -계약해지로 인한 재공급 분양권도 주택소유로 간주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 '소형·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시에는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VII

계약체결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 예비입주자 공급(추첨), 계약기간은 추후 별도 통보	2023.11.27.(월) ~ 2023.11.29.(수) 10:00 ~ 16:00까지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가능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건본주택(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717) *사전방문예약제로 접수예정이나 정부방침에 따라 변동가능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대상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		신분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		수입인지(인지세)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주요사항 설명서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 비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의 현장 위임장 작성 불가
	○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 체결시 필요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적격세대 및 미계약세대 발생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주택소유현황, 청약제한사항 등을 전산검색하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등으로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서류를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확인 필요사항 누락, 생략 등 자격확인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부적격 통보 및 소명 안내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또는 청약제한사항 등이 있는 경우(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음) 및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확인결과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는 유선 또는 대면, 서면의 방법으로 입주대상자에게 부적격 통보하며, 그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계약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거 부적격당첨자의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의거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1.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1순위로 공급신청할 수 없는 자가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 2의2.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3. 제35조에서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제5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에 당첨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이중당첨자, 본인 중복신청/당첨자, 부적격 재당첨자 처리 기준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 예시) ①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②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 부적격 ③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낙첨(신청 이력) = 부적격
-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청약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등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 또는 분양일정상 계약한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 세대는 당첨유형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계기관의 전산검색결과 수신현황 및 입주대상자의 자격확인절차 등 분양일정상 계약완료 이후 일정시점(중도금 1회차 납부전)까지는 사업주체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자체점검, 재검수 등으로 인하여 부적격사항 확인시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으로 불법전매, 부정청약,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 적발시 계약완료 상당시간 이후(입주 전까지)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계약체결조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법인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택 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본 공동주택은 분양대금 중 중도금 1회차부터 6회차(중도금 60% 범위 내)까지 시행위탁자가 이자후불제 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추후,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 시행위탁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출불가 등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행위탁자는 계약금 대출, 중도금 대출, 약정일, 약정금액 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모든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하여, 시행위탁자는 별도로 계약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자가 분양대금 미납 시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계약자는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에 대한 보증수수료(주택도시보증공사 예정)” 를 시행위탁자에서 대납하게 되는 경우, 그 중도금대출 보증수수료는 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로 하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부터는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 보증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이 경우에도 인지대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중도금대출은행에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이자(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이자후불제))는 시행위탁자 등이 부담하며, 분양권 전매, 상속, 증여 등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될 당시 중간 정산을 시행위탁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를 추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부터는 계약자의 실제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분양대금의 10%), 계약금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설령 계약금을 납부 하였더라도 입금자명이 ‘동호수’ 또는 ‘계약자성명’ 이 아니라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음.)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는 중도금대출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미신청, 지연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추후 시행위탁자 또는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대출은행이 변경 및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시행위탁자와 금융기관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시행위탁자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시행위탁자와 금융기관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일정 시점 이후 중도금대출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시행위탁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시행위탁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다도 계약금 미납,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공급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공급대금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국민은행	794037-04-009951	(주)코람코자산신탁
중도금, 잔금			

- 공급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 후 견본주택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중도금, 잔금은 세대별 전용계좌(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개인별 전용계좌(가상계좌)는 계약 체결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공급계약서에 명기된 세대별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VIII

추가 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플러스옵션], [가전옵션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판매·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방법, 납부계좌, 계약주체,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 취소,변경이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일정은 옵션별 상이하며, 자세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임)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급계약에 부수되는 마감공사 관련으로 소요자재를 선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하고, 특히 계약 이후에는 계약 해제, 변경시 원상회복, 변경공사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중도금 납입(회차 구분시 1회차 납입 기준) 이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부과 대상이며, 이는 공급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본 공동주택의 모든 주택형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본 주택의 발코니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분양가에 포함되며, 전세대 발코니확장을 일괄 시공하여 공급하므로 계약자는 개별적으로 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주체에 대하여 발코니 미확장 선택 요구 또는 발코니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선호도,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일부 유무상 옵션타입 반영)
- 본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단위세대 : 발코니 및 실외기실]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플러스옵션

※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 가능

- 플러스옵션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테리어 특화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내용	59A	75A	84A	84B	84C	비고
거실패키지	아트월 대형타일(600*1200), 복도시트판넬+천장 픽처레일, 우물 천장 간접조명, 아트월 벽 조명 단천장, 현관 신발장 하부라인 조명	1,800,000	2,000,000	2,200,000	2,000,000	2,200,000	
주방마감재	선택1 엔지니어드스톤(주방상판, 주방벽) + 상부장 하부 라인 조명	2,600,000	2,700,000	3,000,000	2,900,000	3,100,000	
	선택2 세라믹타일(주방상판, 주방벽) + 상부장 하부 라인 조명	4,100,000	4,200,000	4,300,000	4,300,000	4,500,000	

② 가구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내용	59A	75A	84A	84B	84C	비고
침실1	불박이장	3,000,000	5,200,000	5,500,000	3,200,000	5,500,000	
침실2	불박이장	1,100,000	1,400,000	1,500,000	1,200,000	1,400,000	

③ 바닥 마감 특화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내용	59A	75A	84A	84B	84C	비고
포세린 타일	거실 + 주방	1,800,000	2,100,000	2,300,000	2,100,000	2,300,000	

바닥마감							
------	--	--	--	--	--	--	--

④ 중문 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내용	59A	75A	84A	84B	84C	비고
현관 중문	1FIX + 2연동 슬라이딩 도어		1,100,000			-	
	1FIX + 스윙도어		-			1,200,000	

⑤ 84B 팬트리 옵션 (무상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내용	59A	75A	84A	84B	84C	비고
선택1	84B 대형팬트리	-	-	-	무상	-	
선택2	84B 팬트리+침실2 드레스룸	-	-	-	무상	-	

플러스옵션 계약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납부계좌				납부일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
플러스옵션	우리은행	1005-004-544237	금호건설 주식회사	계약 시	1차 중도금일자 동일	입주지정기간

- 플러스옵션 납부계좌가 상이하오니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파트 공급대금 계좌와 혼동에 유의바랍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문제는 사업주체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는 플러스옵션 공급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서, 중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 바랍니다.
[개인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가전옵션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①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 장소	공급금액	제조사	비고
59A	선택1	2개소	거실 + 침실 1	3,000,000	삼성전자	
	선택2	4개소	거실 + 침실 1 + 침실 2 + 침실 3	5,300,000		
75A	선택1	2개소	거실 + 침실 1	3,100,000		
	선택2	4개소	거실 + 침실 1 + 침실 2 + 침실 3	5,400,000		
84A,C	선택1	3개소	거실 + 주방 + 침실 1	4,300,000		
	선택2	5개소	거실 + 주방 + 침실 1 + 침실 2 + 침실 3	6,800,000		
84B	선택1	2개소	거실 + 침실 1	3,100,000		
	선택2	4개소	거실 + 침실 1 + 침실 2 + 침실 3	5,80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용량은 실 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고 주택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 포함) 산정시 주택형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에어컨 냉매매립배관(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이며 위치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함.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은 스탠드형, 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관련시설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질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동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옵션 계약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함.

② 기타 가전 옵션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내용	59A	75A	84A	84B	84C	비고
인덕션 / 하이브리드 쿡탑	선택1	3구 인덕션(쿠쿠CIRS-FL301FB-E)		550,000			
	선택2	2구 인덕션+ 1구 하이라이트 (쿠쿠CIHR-D302FB)		440,000			
전기오븐	선택1	삼성 전기오븐 (NQ36A6555CK)		400,000			
	선택2	LG 전기오븐 (MZ385EBTA)		500,000			
식기세척기	선택1	삼성 식기세척기 (DW60T7065SS)		880,000			
	선택2	LG 식기세척기 (DIB22S)		1,210,000			
빌트인냉장고 +김치냉장고	선택1	삼성 냉장/냉동고 (4도어, RF60C90R2AP) + 김치냉장고 (3도어, RQ33C74E1AP) + 수납장		5,400,000			
	선택2	LG냉장/냉동고 (4도어, BC4S1AA1) + 김치냉장고 (3도어, BC3K1AA1) + 수납장		6,900,000			

가전옵션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기타 가전 옵션	우리은행	1005-004-544237	금호건설 주식회사

- 가전 유상옵션(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 공사비 납부계좌는 계약시 개인별로 가상계좌를 부여할 예정이며, 품목별로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유상옵션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지정된 납부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관련 기타 유의사항

- 가전기기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하며, 설치 위치는 계약자 임의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표기(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등)는 설계허가도서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 계약 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0조의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입주예정일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입주예정일 : 2026년 3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로 함)

- 입주 예정자들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입주지정기간은 45일로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약 7일 전부터 약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부대복리시설 : 맘스레이션, 노인교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

- 단지 내 부대시설(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보육시설은 기부채납 시설로서 추후 인허가청 판단에 따라 시설물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의무사항		사항, 성능, 설치유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 준수함
	비단열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 준수함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 준수함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 준수함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기정정보알려(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 설치함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함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KS규격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함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 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함.
전기부분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함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함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 지동차단 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지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를 설치함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함.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능력은 (MMI 등급 VII)으로 설계 됨.

지하주차장 높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2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6M 이상	2.7M 이상	2.7M 이상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 및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 소방감리
상호	(주)종합건축사사무소창	(주)천일엠이씨	(주)천일엠이씨
금액	1,106,547,200	228,576,677	253,223,323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겸 시행위탁자	사업주체 겸 시행수탁자	시공사
상호	도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코람코자산신탁	금호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28길 10, 30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1, 10층 (삼성동, 골든타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26, A동 26층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법인등록번호	264371-0004067	110111-2359837	110111-0134877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92023-101-0005900호	₩78,813,98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종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보증약관 제3조)

-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③ 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66-9009)

■ 분양자(매도인)는 보증사고(조합사업비대출보증약관 또는 분양보증약관에 따른 보증사고를 말함)가 발생할 경우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토지신탁 관련 특약

- 본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도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탁자 겸 사업대행자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대행하는 정비사업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건축주(사업주체)는 위탁자인 도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금호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의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정비사업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미시공,사용승인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도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금호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건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관련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위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상의 각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은 관련 법률 및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를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현존하는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책임은 도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합니다.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도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와 수탁자[(주)코람코자산신탁]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 공급계약 대상 재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신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도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매수인”은 이에 동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도봉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명칭은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아파트 명칭 및 펠넴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예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함.
	주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북측면에 도봉역한양수자인(주상복합)이 위치하고, 그 높이는 15층에 해당하며, 일부동에서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음. • 단지 북측면 약 300m 지점에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위치해 있음. • 단지 동측면에 서원아파트가 위치하고, 그 높이는 18층에 해당하며, 일부동에서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음. • 단지 동측면에 내려유치원이 위치하여 일부동에서 낮 시간대 소음 발생 여지가 있음. • 단지 남서측에 도봉중학교가 위치하며, 일부동에서 낮 시간대 소음 발생 여지가 있음. • 단지 남측면 약 500m 지점에 도봉구청이 위치해 있음. • 단지 서측면 약 200m 지점에 경원선 전철1호선이 지상으로 위치해 있어, 일부동에서 소음 발생 여지가 있음. • 단지 서측면 방학역 주변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시 소음발생 여지가 있음.
공통	도로 및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전기 및 가스 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 및 가스 공급을 위하여 공동주택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또는 가스정입기 설치 및 부지 무상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사업은 2007년 8월 30일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사업으로(서울특별시도봉구고시 제2007-43호) 일부 규정은 최초 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음. • 본공사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 및 흙막이 등의 가시설 공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 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일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파트 단지명,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명칭 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수공간,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재활용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정화조,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p>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음. • 주동,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포함), 단지 외부시설물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승인 조건, 공사여건, 특화디자인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보육시설,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설계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위치 및 면적, 개소, 형태 등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시행(변경)인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전문위원회심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 협의결과 조건, 관계 기관 심의결과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통선 등), 단지 내 조경수 식재계획과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인허가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줄눈, 옥탑 구조물, 조경, 사인물, 단지 시설물 등이 분양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 등 시기 조정, 급당인원 변경,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 향후 여건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수용계획 등은 해당 관청의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임. • 초등학교는 서울창도초이며, 중학교는 북부1중학교군에 배치될 예정이나, 북부교육지원청의 중장기 학생배치계획 수립과정에서 내정학교가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및 입주 전 북부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람.
단지	단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휴게마당, 어린이놀이터 등이 혼용되어 설계된 단지임.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수경계획, 휴게공간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수종, 테마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 및 단지 내의 경사로, 단차 처리방안, 조경 계획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지상층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선 위치는 담당 인허가청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 및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로 진입하는 비상차량 동선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입주자 차량 외 진입 가능한 차량은 소방, 치안, 이사, 우편(택배), 폐기물 수거차량 등 입주인 공공이익과 관련된 차량만 진입 가능하며 개별 사유로 지상에 차량 진입이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실과 협의하여 진입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 도로와 단지 내 도로와의 인접 또는 레벨차이, 방음벽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부대시설물(재활용분리수거장, 재활용품 창고, D/A(환기구), 자전거 보관소, 주차장램프 지붕 등) 등은 위치,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차구조(보육시설, 경로당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정공간(어린이놀이터, 녹지,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기계·전기실, 환기창, D/A(환기구) 등)과 재활용분리수거장 등이 주거동의 전·후·측면 등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 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재활용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공사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시설 주변에는 재활용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환기구) 등이 설치되며, 저층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행틀, D/A(환기구)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비주거 부분의 옥상(2층 조정구역) 및 단지 주변에는 에어컨 실외기, 급배기, 환기팬,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비주거 부분의 옥상(2층 조정구역)은 관리자 외에는 출입금지 및 사적사용 금지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등에 의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 등이 발생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음. • 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녹지, 잔디, 수목, 전기·통신시설물(공용·외부조명 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물, 보도·차도 포장재, 수목관리 등)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 운동시설은 자재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시설물 명칭, 위치, 크기 등도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는 각 동 필로티 내부 또는 각동 외부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지의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창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2. 본 계약물건의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p>3.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시설, 놀이터, D/A(환기구), 천창,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재활용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산책로 및 보육시설,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p> <p>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지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외 시설물(출입구,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시설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아간조명,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블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재활용분리수거장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아파트용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단지 남측면의 소공원은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에 따라 조성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조성계획 및 설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장비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양호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될 수 있음. • 도로 및 기반시설 “단지 내 CCTV 등의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 마감, 동 환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에 설치되는 로고의 개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구간이 생길 수 있음.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와 단지 외부와의 단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인접대지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재질, 높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외 조경시설물의 경우 주택전시관 모형 및 분양 카탈로그 상에 표현된 것은 참고 이미지며, 허가권자의 계획에 의해 변경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옥외운동시설, D.A., 상가 등의 단지시설물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102~105동 서측면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일조권/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세대의 경우 주변도로 인접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쓰레기보관소에 인접한 세대에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각 동의 위치에 따라 거리에 차이가 있어 상대적으로 멀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단지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주출입구는 101동과 102동 사이이며, 비상차량 출입구는 104동과 105동 사이로 차량출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103동과 104동 사이는 공공보행통로로 차량출입이 불가함. • 단지 동측면 4m 도로(단지 외부 현황도로)를 통한 단지 내외의 차량 출입은 불가함. • 단지 주출입구 진입 후 지상 차량회전 구간에는 맘스테이션과 차량 승하차를 위한 DROP ZONE이 설치됨에 따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문주 및 경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주출입구에는 문주가 설치되며 인접한 세대에서는 문주 설치로 인한 세대 일조침해 및 조망 간섭, 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문주의 형태, 위치, 마감재, 색상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경비실은 단지 주출입구 문주와 일체형으로 설치됨. • 주차관리시스템 및 경비실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동출입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동 지상 동출입구는 안전을 위해 슬로프 형태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설치되며, 게이트 후 로비와 엘리베이터를, 계단실로 구획 설치 예정임. • 각 동 지하1층과 2층의 동출입구는 단차 없이 설치되며, 게이트 후 로비와 엘리베이터를, 계단실로 구획 설치함. • 각 동 출입구는 공동현관 원패스 시스템이 적용되어 앱을 사용하여 자동 출입할 수 있음. (KEY 미제공) •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는 지상은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설치되며 지하1층에서는 103동과 104동에 계단실을 별도 구획하여 설치 예정임. • 저층부 필로티 부분은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일부 형태 및 통행구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주출입구의 형태(평면, 외관)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아파트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101동과 102동 사이에 주차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해당동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야간조명,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동 남측면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진입램프가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남측면에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D/A(환기구)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북측면에 진입휴게마당과 재활용분리수거장, D/A(환기구)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및 매연, 냄새, 해충이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서측면에 근린생활시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방음벽이 설치되어 일부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이 영향 받을 수 있음. • 102동, 103동, 104동 서측면 저층부 옥상공간에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남측면에 차량회전 구간 및 차량 승하차를 위한 DROP ZONE이 설치되어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북측면에 재활용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냄새, 해충이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코어 PIT 공간을 통해 옥상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정화조 배기시설이 설치되어 고층세대의 경우 냄새, 해충이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1층에 보육시설, 노인교실, 맘스테이션,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동측면에 재활용분리수거장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냄새, 해충이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남측면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북측면에 주민운동시설, 커뮤니티마당, D/A(환기구)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1층에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북측면에 재활용분리수거장,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냄새, 해충이 발생할 수 있음. • 태양광으로 발전 전기는 공용부에서 사용되며, 태양광 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모형과 상이하게 변경 될 수 있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사생활 침해, 소음발생 등 불편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저층부(2층 이하)는 지정적세마감(근생상가는 마감 상이함), 고층부는 수성페인트로 시공되며, 개인/단체에 의한 변경요구가 불가함.
<p>주동 엘리베이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 모델은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사업주체가 확정설치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음. •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p>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 형식상 지하층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 및 주차장 연결통로 등에 주변과의 온도차 등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설비 또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예정임.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 채광용 폴리카보네이트 등은 본 시공 시 디자인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에는 주차장이 없음. • 지하주차장 주차대수는 인허가청의 요구 및 기준에 따라 배치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주차구획 위치 및 형별 대수는 변경 될 수도 있음. • 지하주차장 환경을 쾌적하기 하기 위해 채광용 천창 2개소가 계획되어 폭우 및 폭설 시 일부 빗물이 유입될 수 있음. • 지하1층 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 주차구획과 공동주택 주차구획이 혼용으로 계획되어 주차장 이용 • 지하1층 주차장은 아파트 151대, 근린생활시설 29대로 총 180대 설치 예정임. • 지하2층 주차장은 아파트 총 207대 설치 예정임.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등에 설치되는 트렌치는 일부 부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바닥은 별도의 구배 계획이 없으므로 일부 부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함. •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치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되었으므로, 향후 관련법 개정 및 개인/단체에 의한 추가요구가 불가능함.) •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주차장의 출입구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용시 일부 동선이 중복되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동으로부터의 접근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위치나 구조에 따라 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차로의 높이 2.7m 기준으로 시공되었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소유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시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p>부대복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맘스테이션, 노인교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임. (보육시설은 기부채납 시설로서 추후 인허가청 판단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이 103,104,105동 하부에 계획되어 저층부 세대에 일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내 입의의 공간에 입주민을 위한 A/S센터가 운영된 뒤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입주민에게 양도될 수 있음.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창호는 현장여건에 따라 형태 및 재질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일러실 연도배관으로 보일러실 창호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 PD, EPS, TPS실 등 내측면에는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음. • 계약 이후 입주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단지 조정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조정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건물은 지하수의 상향수압 검토결과에 따라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동의함.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시 분양단지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 각종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및 주차장 피드공간은 지반현황,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의 내부시설물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 관리, 운영하여야 함. • 주변단지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차량전조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건축물의 특성상 층간소음 및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건물의 세대 총고는 아파트는 2.8M,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1층)은 6.3M, 세대 천장고는 2.3M(우물천장 2.42M, 욕실 2.25M)로 계획됨. 세대 내 욕실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장비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양호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될 수 있음. • 도로 및 기반시설 "단지 내 CCTV 등의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한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 • 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재질, 높이 등)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접 동/세대는 소음 및 진동 발생으로 인한 불편을 느낄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옥상구조물의 경우 본 시공 시 높이 및 두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간의 위치 및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단위 세대	평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재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람.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 시 도면 및 견본주택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여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며 아트월은 오픈준눈으로 시공됨.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 또는 침실볼락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음.(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음. • 욕실 벽 및 바닥, 현관바닥, 주방 벽, 발코니 바닥 등의 타일나누기는 견본주택(홍보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창호, 가구, 석재, 타일, 도배,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치수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홍보관)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바닥난방은 기구하부, 욕조 및 샤워부스를 제외한 팬트리, 드레스룸, 욕실 등에 바닥난방이 적용되며, 인근 방 또는 거실에서 통합제어할 수 있음. • 침실 스위치는 조명, 대기전력, 난방제어가 가능한 통합스위치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액세서리 및 가구류의 위치와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음. • 같은 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주택전시관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 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사업주체가 임의조정하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음. 또한, 욕실 출입 시 문턱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음. • 현관디딤판, 화장대 등에 사용되는 인조석은 자체의 특성상 색상과 패턴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자체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제조사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내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덕트/PIT 공간은 임의로 벽체를 철거하여 불법으로 확장할 수 없음.
	발코니 및 실외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선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중샷시, 단열체 추가 설치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세대별 반자높이 차이, 가구 및 구조체의 치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는 실외기실의 여건상 계약자가 희망하는 에어컨의 실외기실의 폭, 높이 및 전기사양 등의 차이로 인해 설치 불가 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에어컨 전문업체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람. • 실외기실에 설비용 배관이 노출 시공됨. • 확장 발코니의 외벽 등은 단열재 추가 설치 시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3층부터 18층에는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하부 필로티세대 완강기가 설치 예정임. (완강기 설치위치는 발코니에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 피난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 배관은 노출로 설치되며, 이로인해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에는 방연, 방재를 위한 철재문이 설치되며, 발코니 방향으로 열리게 설치 예정임. (추후 관계 기관 협의에 따라 열림 방향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에는 환기를 위한 AL 개폐형 그릴창(롤 방충망 포함)으로 설치되며, 제조사, 사양, 색상, 디자인, 열림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디자인 형태,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대 높이는 1M로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제조사, 형태, 색상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음.(2층 완강기 설치 시 발코니 난간대 높이 0.9M로 설치) • 발코니에 설치되는 전동빨래건조대는 조명 및 환기능이 포함되었으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발코니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발코니에 수전, 콘센트가 설치됨. 설치 개소와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실외기실 천정에 전열교환 환기유니트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본 사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마감사양(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천정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침실1 앞 실외기실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세대당 1개소 설치(위아래층 교차 시공)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 다용도실 천정 설치로 유훈 천정고가 주택전시관보다 낮게 시공될 수 있음. • 피난공간(하향식피난구)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공사 및 사업주체는 책임이 없음.
창호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현관방화문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창호 및 문의 형태, 위치는 주택전시관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가구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함. • 주방가구 공사 시 주방벽면에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상부장 깊이가 줄어들 수 있음. • 주방가구 공사 시 후드상부장에 자동식소화기, 후드하부에 자동식 소화기 노출 및 센서, 주방벽면에 조동식 소화기 조작부, 가스차단기 및 전기차단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가구(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신발장) 및 거울 설치부위의 비노출면(천장,벽체,바닥)에는 별도의 마감을 제공하지 않으며, 주방가구 및 불박이장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전기 / 기계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도 및 세대 전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위치 및 색온도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 예정이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 또는 세탁실 상부 천정에 설치되며, 전열교환기 및 연결 덕트가 천정에 노출될 수 있음. • 세대 내 수자원 절약을 위한 절수형 양변기 및 절수형 수전이 설치 예정임. • 환기용 디퓨저의 개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보일러는 적정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 동시 사용 시 다량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배관이 층 하부에 시공되는 층하배관 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위치 및 개소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본공사시 싱크대 하부에 온수분배기 및 배관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을 사용할 수 없음. • 욕실 천장 내에 상부세대용 급수급탕 분배기 및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세대 환기 장치 및 보일러 등 장비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실내로 전달될 수 있음.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시설은 세대별 당해층 직배기로 계획되어 세대 외벽에 환기캡이 설치되며, 세대 환기계획은 추후 인허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물 천장 및 각실의 커튼박스의 크기는 스프링클러 및 환기 배관등의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배수배관, 배수구 등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수전, 배수구의 위치 및 개소는 세대 별로 상이하므로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실외기실 천장에 설치되어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H13등급 헤파필터 (초미세먼지를 99.95%까지 걸러주는 필터)가 적용 설치되며, 미세먼지 센서 및 CO2센서가 적용된 유선리모컨 장비 및 급배기 덕트가 노출 설치되고,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통신단자함과 세대분전함은 침실 문 뒤, 침실 벽, 복도 등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디자인 형태, 사이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수전, 도기, 액세서리, 배선기구, 스위치, 전등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의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통신 단자함, 세대분전반, 스위치, 조명기구,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천장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유상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무상옵션 선택결과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되지 않은(혹은 샘플로 전시된) 마감재로 해당 세대가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과의 마감재 차이로 인해 실제 입주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에어컨 냉매매립배관박스과 전원콘센트는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이며 위치이동, 추가 설치 등의 계약자의 요구는 적용이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관련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함. • 시스템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고 주택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 계약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함. • 옵션 선택으로 설치되는 면적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유상옵션 품목 선택 이후 제품 특성상 시장 판매가가 감액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에 대한 차액이나, 감액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책임 없음.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1Fix + 2연동 형태로 시공되며, 현관중문 미설치 시 벽체가 추가 설치되며 신발장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옵션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발생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됨. • 비스포크, 오브제 빌트인 냉장고는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음. • 비스포크, 오브제 패키지 마감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시 제조사의 사정으로 단종될 경우 대체 모델이 설치됨. • 식기세척기는 전면 가구판 마감이 설치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 시 입주 이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분양 / 견본주택	분양홍보 물 및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철회할 수 있음.(견본주택 공개기간 : 정당당첨자 계약일까지 공개 후 철회예정임. 단, 철회 시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보관함)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 준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공사시 세대 내부에는 관련 법규에 맞추어 시공됨. (본 공사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단천정, 커튼박스, 창호, 주방기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는 84B형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수납공간, 실면적, 발코니 형태 및 크기 등 견본주택에 전시된 주택형과 다른 사항(마감자재, 제품품목 및 가구 디자인 등)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각종 분양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체특성상 본 시공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귀, 품질, 제조회사의 도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시공여건 개선 또는 신제품의 개발 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건립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건축허가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견본주택기준으로 건축허가변경(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함.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창호형태, 축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건본주택에 시공된 창호, 가구, 마루, 도어, 중문 등은 본 공사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바닥배수구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 세대내에는 보안용 CCTV가 설치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음.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테이블, 의자, 인테리어소품 등), 옵션품목이 혼합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건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조명, 스포츠조명은 전사용이므로 계약 전 확인 바람. 건본주택 내 설치되는 세대 난간의 개폐기능은 주택전시관 피난 및 관리를 위한 것이며, 본 공사 시 개폐가 불가능한 난간이 시공됨.
제작물 및 인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제작물 및 인쇄물에 사용된 CG, 일러스트,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각종 제작물 및 인쇄물은 인·허가 및 분양승인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각종 제작물 및 인쇄물에 기재된 개발계획은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관계기관에 따라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주민운동시설, D/A, 재활용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수경시설, 포장,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 또는 삭제, 추가될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은 모형상에 생략되어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음.
분양상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상담 및 계약과정에서 분양관련 직원과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양가 이상의 이익(프리미엄)보장, 계약 해제, 연체료 감면, 대출보장 및 유사한 보장 행위 계약 후 환매보장, 매매 또는 전세의 알선을 보장하는 행위 공급대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 아파트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별도의 개별약정 행위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영업을 위한 환기설비,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로 소음 및 냄새가 발생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영업에 의한 소음 및 야간 빛 공해로 인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계단실은 통한 옥상 출입은 유지관리를 위한 동선으로 입주자 및 근생 이용객은 사용 불가함.
시설물의 유지,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일부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AS사무실을 주차장,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동PT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Mock 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하기로 함. 공사 중 계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주민사전점검행사 전 샘플세대 공개행사 및 개별세대 방문을 진행하지 않으며, 현장방문허가 없이 무단 현장침입 등을 통한 현장방문 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시공사 및 시행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각종 홍보물 및 배치도의 대지경계선은 최종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자하시기 바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각 단위세대는 이사 시 차량 접근 동선, 주동의 위치 및 단위세대 창호크기의 제한으로 인하여 대형이삿짐 및 중량물의 운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단지 내 단위세대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이사계획을 세우시기 바람. 보일러와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사위,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의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건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바람.

■ 분양 홈페이지 :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 홈페이지 (<http://www.dbkhapt.com/>)

■ 견본주택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717

■ 분양문의 : 02-955-8801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